■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1. 20.>

(앞쪽)

임대사업자 등록증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임대 사업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 구분	주택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주택 등록일	임대 개시일	등록 이력
건물 주소	호, 실 번호 또는 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1.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임대개시일 이후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산정되므로 임대개시일란이 빈칸인 경우에는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공동사업자 현황(대표자외의 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확인

등록사항 변경 현황

변경연월일	변경사항		변경사유	확인
	변경 전	변경 후		

말소(양도) 현황

말소일	말소사항	말소사유	확인

※ 작성시 유의사항

1. 공동사업자의 경우 성명(법인명)란에 대표자외 ○명으로 기재하고, 공동사업자 현황은 뒤쪽에 적습니다.
2. 등록사항 변경현황란에는 임대주택 등록, 주소 등 변경, 오기(誤記) 수정 등을 적습니다.
3. 말소(양도) 현황란에 임대사업자 말소, 임대주택 양도 등으로 등록주택에서 제외 등을 적습니다.